

## '제 3회 수원레저차량산업전' 참가신청서(계약서)

참가업체 (  국내제조  수입유통 )

회 사 명	국문 :	영문 :	
주 소	(우편번호 :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팩 스	
이 메 일		홈 페이지	
전시회 담당자	성명 :	부서 :	직위 :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i>*추후 업체용 모바일 초청권 발송 예정. 담당자 휴대폰 정확히 기재바랍니다.</i>	
세금계산서 담당자	성명 :	부서 :	직위 :
	전화 :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	
전시 품목 <i>*필수 기재*</i>		전시 품목 브랜드 <i>*필수 기재*</i>	

참가신청 및 부대시설 신청 *\*필수 기재\**

구분	항목	신청규모	단가 (VAT별도)	비고
부 스 신 청	독립부스	부스	사무국으로 문의 전화 : 02-796-8710 메일 : allfair@allfair.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만 제공 (1부스=9m<sup>2</sup>)</li> <li>•파이텍스 시공 필수</li> <li>•부스 시공 시 킨텍스 지정업체 이용해야 함</li> <li>•제공사항 : 시스템 부스(1부스=3m×3m), 파이텍스, 상호간판, 전기1kw, 콘센트1개, 의자1개, 안내데스크 1개</li> </ul>
	기본부스 (2면오픈)	부스		
부 대 시 설 신 청	전기	kw	72,000원/kw(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립부스 전기 신청 시, 콘센트 1개 제공</li> <li>•사용료 및 공사비 포함</li> </ul>
		kw	100,000원/kw(24시간)	
	전기콘센트	개	30,000원/개	
	전화	회선	70,000원/회선	
	인터넷	회선	150,000원/회선	
	급배수	개소	200,000원/개소	
	파이텍스	부스	45,000원/부스	

※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인보이스를 보내드릴 예정이며, 계약금(참가비의 50%)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해 주시고 잔금완납일은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참가비의 50%)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하셔야 참가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미납부 시 참가 신청이 취소됩니다.**

납 부 계 좌	우리은행 1005-402-920112	예금주 : (주)가족사랑전람	※ 입금 시 반드시 업체명 기재
개 인 정 보 보 호 정 책	※ 참가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수원레저차량산업전' 공식홈페이지의 정보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제 3회 수원레저차량산업전'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주식회사 가족사랑전람 귀중

# '제 3회 수원레저차량산업전'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 제 1조 용어의 정의

- ①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 ② 전시회라 함은 「제 2회 수원레저차량산업전」을 말한다.
- ③ 주최자라 함은 주식회사 가족사랑전람(AllFair)를 말한다.

## 제 2조 참가신청 및 계약

- ①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1주일 내로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참가 신청이 완료되며 미납부 시 참가 신청이 취소된다.
- ② 전시자가 잔금을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는 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진행하며,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 3조 전시부스 배정

- ①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규모와 전시품목,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신청순서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 ② 전시자는 추후 부스 배정의 문제로 인해 주최자에게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4조 전시공간 사용

- ① 전시자는 신청한 부스규모 내에서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전시품을 전시해야 한다.
- ②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혹은 지적재산권을 방해하는 전시품 발견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 전시자는 타 전시자와 방문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주최자는 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 5조 위약 및 해약

- ①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전시자가 참가계약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참가 취소의 경우는 <위약금 내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위약금 내용>

- 전시회 개최 60일 이내취소 : 참가비의 6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전시회 개최 30일 이내취소 :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제 6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7조 부스 장치 및 전시품 진열

- ①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시공하여야 하며, 장치공사 지정 기간까지 장치물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설치,장치기간 동안 시간 외 사용을 해야 할 경우 주최사와 수원컨벤션센터가 협의하여 작업연장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하며, 연장된 시간만큼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전시자는 전시공간의 바닥, 천장, 기둥 면적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전시장을 손상했을 경우 원상복구 등 전시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부스 시공 시 필히 수원컨벤션센터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8조 장치물 철거 및 전시품 반출

전시자는 반출-철거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철거를 지연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9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 ①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 ② 전시자는 전시준비, 철거기간 및 전시기간 동안에 부스 내의 시설, 설비, 비품, 전시품 등의 도난, 파손 방지를 위하여 자체관리자를 상주시켜 전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부스의 훼손, 부스 내의 시설, 설비, 비품, 화재, 도난, 파손, 부스 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자의 부스 운영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 10조 방화규칙

-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②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1조 소음규제

- ① 음향기기의 소음은 주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② 주최자는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주변 전시자에게 피해 발생 시 주최자는 소음 확인 후 음량을 낮추게 하거나 스피커 사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해당 전시자는 차기 전시회 참가 시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 12조 보충규정

- ①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전시운영을 위하여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전시자는 수원컨벤션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대표자 \_\_\_\_\_(인)